

공정거래를 보다 잘 준수하기 위한 짧은 소견

김상열 / (주)유공 업무부 대리

요즈음 기업환경의 변화가 전례없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이에 따라 기업체 및 기업체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 관련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영활동시,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예전에 문제로 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 혼란스런 경우를 자주 겪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영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받거나, 개선방안을 제시받지는 못하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라는 부담만 더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요구 받게 됨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는 기업의 경영활동 기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여 가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경제적으로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더불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중인 공정거래제도가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핵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기업의 제반활동에 대한 경기규칙 설정 및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간 경쟁의식은 강하나 불공정한 경쟁방법이 상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풍토를 확고히 정착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각 기업들은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매출액, 매출원가, 손익, 투자액, 경제성 등의 요인이 의사결정시의 주요 잣대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여러가지 경험 및 관련 지식·정보 등을 잘 활용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정거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부의 법규·지침 등의 내용이 아직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기업체 나름대로의 체계적 연구·경험축적 및 관련정보와 조사활동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우기 상관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해 오며 따라, 공정거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위법행위·법범자만 다수 양산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활동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환경·안전 등 타분야에서는 각종 지침·규

정 등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감독 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의사결정시 상대적으로 혼선이 많지 않으며 효과적으로 대응·개선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공정거래 분야는 기업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제반 제도가 불명확하고 개선방법·개선효과 등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회색지대(Gray Are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공정거래제도는 경영활동을 현실적으로 제약하고 사업의 목표달성과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단기간의 경영실적이 우선 강조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제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목표달성 수단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결국 공정거래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이라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 준수는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단순한 제약요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회사 위험요인의 체계적 제거, 사회규범에 맞는 경영 실천, 소비자 보호, 책임 경영풍토 조성 및 해당 시장 정상화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은 공정거래 준수가 회사의 독자적 경쟁력을 증대시켜 무한경쟁시대에 세계 어느 기업과도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혁신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고 경영층부터 확고한 의지로 업계를 선도해 가는 자세가 긴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여 무심코 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가 불공정거래로 적발되어 자신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

래함은 물론,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은 그동안 힘들여 쌓아온 자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더욱 더 요구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제도의 사소한 위반만으로도 기업의 도덕성마저 위심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기 이전에 지금 당장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정거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모색·실행해 가는 자세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경쟁촉진을 통해 경제 각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공정거래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다만 기업체의 공정거래 확산 및 발전을 지원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후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바람직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바램을 몇자 적어 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제도는 경쟁제한적 제반제도가나 시장구조 또는 상관행 등을 개선·발전시켜 경쟁촉진적인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경쟁촉진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산업의 일반특성, 시장구조, 상관행,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해 정책집행자

인 정부가 해당업계 종사자 못지 않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산업 특성 등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자체 분석·연구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업계 등의 관계자와 다양한 접촉, 의견교류 등을 통해서 해당산업에서의 시장구조, 상관행, 관련제도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제반요인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변화·개선을 계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공정거래의 Rule 설정 및 공정거래 여부 에 대한 심판관으로서 정부는 특정사안의 공정성 여부 판정에 있어, 해당 산업 및 시장 구조, 생산자-유통업체-수요자간의 Bargaining Power 등 거래와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종합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해당법규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특정한 잣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공정거래 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매출액, 자본금 등 외형적 규모 때문에 더 큰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 구체적 예가 우월적 지위 보유자 판단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회의 불균등이 심화되어 결국 공정거래가 저해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철저히 방지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단순히 범위반 행위의 적발, 처벌 등의 사후조치보다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도, 교육 등의 사전예방 조치를 더 강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정거래제도를 교통법규와 같이 적발만 되지 않으면 그만이며, 적발되면 자신만 운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일부의 시각은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사후조치만을 강화하는 데 대한 국민들이 부정적 의식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 법규, 지침, 규정 등이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결례 등을 기업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정거래가 저해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거래는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체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사회에서 수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하며, 기업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더욱 더 활기차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기업, 우리 사회에 아직 공정거래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깊이 자성하며, 위원회의 역할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축소(?)되는 때를 기다려 본다. ■